

하도급대금 조정협약

공정거래위원회 / 양동훈 사무관

1. 2009. 4. 1. 주요개정사항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 신설

기존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법
<신 설>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을 명시

- 조정신청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여 대금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

-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대금조정이 불가피하기만 하면 신청가능¹⁾²⁾
 -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불응 시 시정조치 대상)
 - 조정기간은 30일로 명시
-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2011. 3. 29. 주요개정사항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기존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법
<신 설>	<p>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요건·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배제됨
 2) 대금조정권을 조합이나 협회에 위임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자에게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을 주어 원사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고, 대금협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도 제시되었으나 '법 위반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제한은 국가계약법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보류됨

- 2009년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이 도입되었으나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이를 행사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조합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규정한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만 권한을 인정하고,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함
 - 조정신청이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이를 지원
-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이 가능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 조합은 대금 조정신청을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조합의 대금조정신청이 부당공동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둠

□ 하도급대금 조정 Fast Track 제도 도입

기존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법
<신 설>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u>3.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즉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협의기간의 낭비를 없앴

3. 2013. 5. 28. 주요개정사항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도입

기존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법
<p>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u>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u>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u></p>

- 2009년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여도 협의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여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동일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되기도 어려움
 - 2009년 이래로 동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단 한 건만 이루어짐(골판지조합)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신청이 있으면 조합은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조정협의권 행사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 되었음

- 기간요건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변경
- 가격요건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신청 가능
- 원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사업자로 제한함
 - 영세 원사업자에 대한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행사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일 조합 소속일 경우 조합의 조정협의를 금지됨
-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조정협의를 요청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진행하고 있던 대금협의를 중단된 것으로 의제
 - 중복된 협의로 인한 혼선 방지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진행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조정협의를 할 수 없도록 함
 - 협의 후 다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2013. 12. 3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제정

□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의 개념

- (원재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③ 용역위탁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록·저장매체 및 화물자동차의 연료, ④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이루어진 중간재로 규정
- (원재료의 가격) 원재료의 가격은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 규정
 - (기준가격)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원재료의 시장가격에 따름
 - (비교가격) 가격 변동이 된 상태의 원재료의 가격을 말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함
 - (시장가격) ① 거래상 기준으로 통용되는 공시가격, ②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의 평균가격, ③ 판매처의 제공가격 순으로 결정함

- (화폐단위) 기준가격과 비교가격은 원(W)화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음(환산은 한국은행 기준환율에 따름)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 법에 따라 신청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 (일반적인 신청요건) ① 수급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협의대행 신청이 있을 것, ②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일 것, ③ 원사업자가 조합원이 아니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일 것, ④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했고, 7일 이내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할 것, ⑤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 또는 계약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⑥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을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직전 사업년도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실제 위탁일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되, 위탁 일을 알 수 없으면 발주서·주문서 등으로 판단

- (원재료 가격 기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할 것

- 비교가격은 계약 체결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함

-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것

- 비교가격은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함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은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을 바탕으로 가격 상승 전후의 원재료 대금을 비교하여 산정

* (예) 기성 40%(잔여 60%)인 상태를 가정했을 때 하도급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7.5% 이상 상승하여야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 되어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음

계약금액 기준에 따르면 “가격인상률 \geq (잔여 하도급대금 \times 3%) \div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으로 산식이 도출되는바, 이를 위 (예)에 적용해보면 하도급계약금액을 A라 할 때 다음과 같이 된다.

$$(잔여 하도급대금 \times 3\%) \div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 \\ = (A \times 60\% \times 3\%) \div (A \times 60\% \times 40\%) = 0.075 \text{이므로, } \underline{7.5\% \text{ 이상 원재료 가격 상승이 필요}}$$

- (Fast-Track 신청요건) ①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면서 위의 원재료 가격 기준이나 계약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 이상일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신청 허용

- (5% 기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5% 이상일 것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 조정협의의 신청

- (수급사업자의 직접신청) 조정협의신청서 및 조정협의관련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출

- (조정협의신청서) 조정협의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함

1.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의 내용
3. 하도급대금 총액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입찰일이나 직전 하도급대금 조정일)
5. 조정협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명칭, 하도급대금 중 해당 원재료대금의 비중, 기준가격 및 비교 가격 등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지표 및 내용

- (조정협의관련자료) 조정협의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음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경쟁입찰의 경우에 한함)
3.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재료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재료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실태 및 원재료 재고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4. 기성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조정협의를에 필요한 서류

- (조합의 대행신청) 수급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 및 조정협의관련자료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이를 기초로 조정협의신청서 및 조정협의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협의대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제출

- 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은 협의대행사안의 의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해도 된다는 점을 명시

- (제출방식) 직접제출, 내용증명우편 발송, 공신력 있는 전자문서 발송 등을 전부 허용. 다만,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 후 유선 등으로 발송사실을 알리도록 함.

▪ 조정협의

- (횟수·장소) 30일 내 2회 이상 협의 및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협의를 원칙으로 함*

- (당사자)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

- (협의방식) 최고가격이 대금조정 기준과 혼동되지 않도록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및 예상 변동 추이, 기성고 및 잔여 과업의 내용, 원재료의 재고량 및 향후 구매량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

- (다수 조정협회의 처리) 하나의 조합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를 위해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 별로 각각 협의하도록 함*
- (기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조정협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 소급하여 정산함
- (의무사항) 원사업자는 조정협의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

* (예)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의 예시임

- 조합은 납품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원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조정협회의 종료

- (조정협의 시) 조정협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도록 함
 - (조정협의의 효력) 원칙적으로 조정협의 신청일에 소급하여 적용함. 다만, 수급사업자가 가격이 상승한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후에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정협의의 적용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정결렬 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정협의 재신청의 제한) 조정협의 종료 후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조정협의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함